「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(증자)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기획조정실장 박 정 은

나. 제안이유

○ 구미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강화하여 구미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,

○ 자체개발사업 추진여력 확보 및 신공항 배후도시 등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 확보.

○ 이에 출자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4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(증자) 여부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자개요

- 출자기관 : 구미도시공사
- 출자내용 : 구미도시공사 사업 자본금
- 출자금액 : 현금 250억원(전액 시비)
- 출자시기 : 2024년 12월
- 출자금용도 : 개발사업 자본금(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등)
-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현황 (단위 : 억원)

현 금 출 자			비 고
계	원시자본금 ('99. 10)	공사전환 출자금 ('23. 12)	
25.01	5.01	20	최대출자 가능한 수권자본금 5,000

○ 구미도시공사 개발사업 범위

-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, 개발, 공급, 임대 및 관리
-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, 개량, 공급, 임대 및 관리
- 관광지,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
- 도로·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-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수익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
○ 출자 필요성

- 구미시의 정책사업 검토 및 추진을 위한 사업자본금 필요

- 중·소규모 자체 신규투자(출자)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
- 납입자본금 확충으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(SPC)방식의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법적 최소 출자자본금 기준 충족
-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
-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
- 재무 건정성 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

○ 추진(또는 예정) 사업 현황
- 구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(단계: 타당성 검증)
- 신공항 배후 신도시 조성사업(단계: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)
- 구미1공단 재생(활성화) 사업 참여(단계: 기본계획 수립)
- 기타 중·소규모 자체 경영수익사업 구상 및 검토 중

○ 관계법령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
- 「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제4조
- 구미도시공사 「정관」 제4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**본 출자안은**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3조에 따른 구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,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2023년 10월 구미시설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구미도시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는 필요한 사안임. 많은 지자체에서 공사로 전환한 후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영 정상화되기도 하지만, 여전히 많은 부채로 어려워하는 곳도 있음. 우리시는 초기 사업개발에 집중하여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함.

- 출자된 자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.

- 또한, 도시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.

- 그리고, 집행기관과 구미도시공사는 공사의 투명한 추진과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, 필요성 및 타당성, 예산 운영 등 현황에 대하여 의회와 소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5. 토　론　요　지

- 해당 출자에 대한 예산 심사 전까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7조의2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고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　　략

7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